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**대상 펀드:**

no.	펀드명	클래스 신설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 취득 한도	모투자신탁 추가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결산	변동성	기타
1	미래에셋차이나심천 100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-파생형)	O	O	-	-	-	-	-	-
2	미래에셋 OCIO-DB 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O	O	-	-	-	-
3	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자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-	-	-	O	O	-	-	-
4	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-	O	-	-	-
5	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4 호(주식)	-	-	-	O	-	O	O	10)
6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 4 호(주식)	-	-	-	O	-	O	O	8), 9) 10)
7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50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-	-	-	O	-	-
8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-	-	-	O	-	-
9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O	-	O	O	10)
10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O	-	O	O	10)
11	미래에셋소비성장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-	O	O	-
12	미래에셋연금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O	O	-
13	미래에셋연금동행중립형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-	-	-	O	-	10)
14	미래에셋연금동행안정형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-	-	-	O	-	10)
15	미래에셋연금동행성장형혼합자산투자신탁(재간접형)	-	-	-	-	-	O	-	10)
16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(USD)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-	O	O	10)
17	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 1 호(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-	-	-	O	O	10)
18	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O	O	-
19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	-	-	-	-	O	-

2. **변경 사항:**

1) 클래스 신설

2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

3) 모투자신탁 추가

4) 투자대상자산 추가

5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9) 법 개정사항 반영

10) 이해관계인 삭제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10월 18일 (수)

4. 변경 내용:

1) 클래스 신설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아래 참조1]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신설>	[아래 참조1]
제37조(보수)	<신설>	[아래 참조 1]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환매수수료	<신설>	[아래 참조 1]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[종류형 구조]		
제2부.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		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		

및 비용		

[참조1]

구분	가입자격	판매보수(%)	선취 판매 수수료	환매 수수료
종류 C-P2	**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**	**0.76**	**해당사항 없음**	**해당사항 없음**
종류 C-P2e	**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**	**0.38**	**해당사항 없음**	**해당사항 없음**

2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

미래에셋차이나심천 100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	
항목	**변경 전**	**변경 후**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장내파생상품]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통화나 주식·채권·통화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(다만,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.) **(위험평가액 10% 초과 가능)**	[장내파생상품]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통화나 주식·채권·통화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(다만,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.) **(위험평가액 40% 이하)**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2) 투자제한	[파생상품 투자]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**100%**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[파생상품 투자]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**40%**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3) 모투자신탁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**<신설>**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**-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(재간접형)** **-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**
제 16 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제 3 조제 5 항제 5 호 내지 **12** 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	제 3 조제 5 항제 5 호 내지 **14** 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[모자형 구조] **<신설>**	[모자형 구조] **-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(재간접형)** **-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**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**<신설>**	**-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(재간접형)** **-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**
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(1) 투자전략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**<신설>**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**-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(재간접형)** **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(REITs 포함)에 50% 초과하여 투자합니다.** **② 국내 상장 리츠(REITs) 및 상장 부동산펀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 확대와 추가 수익 기회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장 인프라펀드 및 해외 상장 리츠(REITs)에도 투자합니다.** **③ 상장 리츠(REITs)/ 상장 부동산펀드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편입비는 80%를 기준으로 최소 65%에서 최대 95%를 목표로 변동성매매를 수행하며,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편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채권 및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인컴수익을 누적할 계획입니다.** **④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 외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.** **※비교지수: 없음** **-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** **①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익성과 건전한 재무구조, 낮은 이익변동성을 가지며, 경영진의 자본배분능력이 우수하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퀄리티(Quality)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합니다.** **※ 비교지수 : 없음**
제2부. 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<신설>**	**-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(재간접형)** **-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**

4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**3. <신설>**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**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**
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**3. <신설>** 4. 제 1 호 **및 제 2 호**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**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** 4. 제1호 **내지 제3호**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**<신설>**] <생략> **<신설>**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**환매조건부매수**] <생략> **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**
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**<신설>**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**<신설>**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**환매조건부매수**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**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**

5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모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	
항목	**변경 전**	**변경 후**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**<신설>**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**환매조건부매수**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

	<생략> **<신설>**	<생략> **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**

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비용>	-	총보수· 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

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4호(주식)	2	2	24.02	20.37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4호(주식)	2	2	22.91	17.04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10	5.24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3.87	2.82
미래에셋소비성장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7.44	5.49
미래에셋연금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16.62	16.41
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(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3	4	13.35	8.74
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(USD)(주식-재간접형)	2	2	23.45	19.5
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21.93	19.75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3	21.03	13.64

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
제2조(용어의 정의)	**<신설>**	**-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**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**<신설>**	**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**

9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**투자신탁재산으로**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**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**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**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** ②~③ <생략> **<신설>**	**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** ②~③ <생략> **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**

10) 이해관계인 삭제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

	- 신탁업자 : 국민은행	<삭제>

**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**

미래에셋자산운용㈜